

제주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11593(본소), 2022나11609(반소) 판결 [정산금 청구의
소 · 구상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1. A

원고, 항소인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트너

담당변호사 김희성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변 론 종 결 2022. 9. 7.

판 결 선 고 2022. 11. 9.

제1 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3. 15. 선고 2020가단57563(본소), 2020가단 70962(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A와 원고 B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B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및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A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 A와 원고 B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4/10는 원고(반소피고) A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 원고 B에게 ① 주위적으로 62,723,8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예비적으로 50,385,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109,206,0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1)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원고 B에게, 예비적으로 원고 A에게 84,295,226원(= ① 피고의 지분 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원고 A 또는 원고 B의 손해배상금 채권 485,033,835원 중 일부 100,000,000원(또는 동업 지분 임의처분 정산금 55,000,000원) + ② 원고 A 또는 원고 B의 미지급 수익금 채권 7,723,819원 + ③ 원고 A의 약정금 채권 89,206,056원 + ④ 원고 A의 카페 공사비 정산금 채권 20,000,000원 - 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32,634,649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 이 법원에서 ① 원고 B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동업 지분 취득이 인정될 경우 원고 B의 동업 지분 정산금 채권 55,000,000원, 예비적으로 동업 지분 취득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지분 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채권 42,661,751원(= 기대 수익금 19,312,695원 + 전세권 사용수익에 대한 금전적 가치 23,349,056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여기에 미지급 수익금 채권 7,723,819원을 더한 금액(주위적으로 62,723,819원(= 55,000,000원 + 7,723,819원), 예비적으로 50,385,570원(= 42,661,751원 + 7,723,819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 원고 A에 대하여는 약정금 채권 89,206,056원과 카페 공사비 정산금 채권 20,000,000원을 합한 금액인

109,206,056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나. 반소

원고 A는 피고에게 110,233,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나. 2)항의 “지분양도협약서를 작성하였다.”를 “지분양도협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협약서’라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의 청구

1)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

피고는 이 사건 지분양도협약서에 따라 원고 B에게 매달 수익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2017. 11.부터 2020. 1.까지의 수익금 7,723,81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수익금 7,723,8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가) 주위적 청구(정산금)

E는 피고가 자신의 조합원 지분 중 일부를 원고 B에게 양도한다는 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원고 B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와 원고 B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대금을 전부 취득하였으므로, 매도대금으로 수수한 금액의 일부를 원고 B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카페의 지분 총액은 2억 원이고, 원고 B의 지분 27.5%에 따라 계산한 원고 B의 지분 금액은 5,5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정산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 원고 B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B와 피고가 이 사건 지분양도협약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원고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양도협약에 따른 수익금 및 전세금 채권을 갖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지분양도협약을 10년간 유지해야 함에도 임의로 이 사건 카페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지분양도협약에 따른 수익금 지급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2020.

4.경부터 2023. 12.까지의 손해배상금으로 19,312,695원(= 직전 12개월 수익금 평균 429,171원 × 4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는 이 사건 카페가 건축된 토지의 전세권의 27.5%에 해당하는 권리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는데, 이 사건 카페가 제3자에게 매각된 이후에는 사용수익권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전세금 2억 원에 대한 원고 B의 지분 27.5%에 따라 계산한 5,500만 원 중 이 사건 지분양도협약서상 존속기간인 9년 8개월(106개월) 중 45개월(2020. 4.경부터 2023. 12.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인 23,349,056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① 주위적으로 미지급 수익금 7,723,819원 및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5,500만 원 합계 62,723,8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예비적으로 미지급 수익금 7,723,819원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2,661,751원(= 19,312,695원 + 23,349,056원) 합계 50,385,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의 본소청구

1)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정산금 89,206,0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카페의 공사비로 약 2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중 E가 104,427,500원을, 원고 A가 4,000만 원을, 피고가 약 5,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원고 A와 피고는 원고 A가 부담한 4,000만 원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지분양도협약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의 절반인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카페의 공사비 정산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

피고는 2015. 8. 25.을 기준으로 원고 A에게 89,206,056원의 이 사건 정산금 채무가 있었으나, 2015. 9. 5.부터 2016. 4. 9.까지 합계 12,760,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정산금 채무는 76,446,056원(= 89,206,056원 - 12,760,000원)이 남았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2016. 4. 17.을 기준으로 52,045,056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으므로 위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의 이 사건 정산금 채무는 2016. 4. 17.을 기준으로 24,401,010원(= 76,446,056원 - 52,045,056원)이 남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134,634,649원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있으므로, 위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110,233,639원(= 134,634,649원 - 24,401,010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원고 A는 피고에게 110,233,6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 내용 · 목적 ·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와 피고는 모두 이 사건 지분양도협약서의 당사자는 명의자인 원고 B가 아니고 행위자인 원고 A임에 의사가 일치하였는바, 이 사건 지분양도협약서의 당사자는 원고 A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 A와 피고는 2015. 8. 25.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합의서에는 ‘피고는 이 사건 카페 지분 중 절반을 원고 A에게 양도한다. 단 원고 A의 요청에 의해 부인 원고 B를 대리인으로 수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기로 하고 공증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이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카페의 지분 중 절반을 양수하는 사람은 원고 A임이 명확하다.

② 원고 A와 피고는 위 합의서에 따라 원고 B를 당사자로 하는 이 사건 지분양도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와 이 사건 지분양도협약서를 포함하여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모두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일들이고, 원고 B가 이 사건 지분양도협약서나 인증서를 작성하는데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카페에 관한 메일을 원고 A에게 보냈고, 이 사건 카페의 수익금 상당액도 모두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④ 원고 A와 피고는 이 사건 카페 이전에도 I회사, 주식회사 H 등을 함께 운영하였던 적이 있는 반면, 원고 B는 피고와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A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 B 명의로 이 사건 지분양도협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원고 A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4의 가.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공사비 정산금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카페 공사비와 관련하여 2015. 8.

25.경까지 원고 A는 106,832,500원을 수령하고 77,296,093원을 지출하여 29,536,407원이 남아있던 사실, 피고는 52,000,000원을 수령하고 71,476,170원을 지출하여 19,476,17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카페의 공사비로 2억 원이 지출되었다거나 원고 A가 지출한 이 사건 카페 공사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 B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원고 A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 건, 판사 정가원, 판사 이선희